

## 「2024년 협동조합 내실화 지원사업」 공급 협의체 모집공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사회적경제 현장 협의체의 협동조합 지원 기능 강화와 협동조합의 양적·질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2024년 협동조합 내실화 지원사업」 공급 협의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2월 19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 1. 사업목적

- (협동조합 확대 및 성장 강화)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내실화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의 양적 확대 및 성장기반 강화
- (협동조합 지원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현장 협의체의 협동조합 지원 기능 강화를 통해 개별 협동조합뿐 아니라 협의체 내 역량 축적으로 지속적인 멘토·멘티 생태계 조성

### 2. 모집개요

- (모집 기간) 2024. 2. 19.(월) ~ 3. 4.(월) 17:00(예정)
- (모집 자격)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 현장 협의체(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협의회, 사회적경제협의회 등)로 구성된 컨소시엄
  - 신청 권역 내에 협의체가 소재하여야 함(컨소시엄 포함)
  - 주관 협의체를 제외하고 컨소시엄 2개소 이상 참여 필수(총 3개사 이상)
  - 컨소시엄 참여의 경우, 주관 협의체가 아닌 경우 중복 신청 가능
  - 협의체 당 (사회적)협동조합 회원사 10개사 이상 보유 필수(컨소시엄 포함)
- (모집 내용) 권역별 협동조합 지원 협의체 모집(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내실화 지원을 위한 상시상담, 컨설팅, 교육 등 제공)
- (모집 규모) 총 2개사 (경기 북부, 남부 각 1개사 / 북부: 3천만원, 남부: 5천만원)

○ (주요 지원내용)

- 사업 기간: 협약체결일 ~ 2024. 10. 30.(수)

- 지원항목 및 세부내용: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내실화 지원’ 사업비

\* (북부) 3천만원 / (남부) 5천만원

- 권역 내 시·군 수 비중에 따라 책정함

\* 협동조합 교육·컨설팅에 있어 직접적인 소요 예산

- ※ 인건비 비율 30% 이내(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및 상시상담 수당 합계)
  - 주관 협의체 소속(내부인력)에게만 인건비 지급 가능
- ※ 자산성 물품 구매 불가
- ※ 협약기간 내 수행 가능한 사업계획 제출
- ※ 사업비 지원을 통한 구체적인 결과물 도출 제시
- ※ 부가가치세 미지원(발생 시 자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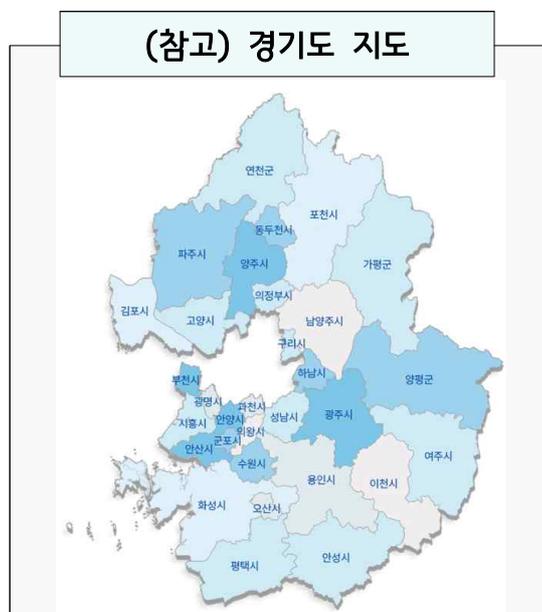
- (권역 구분)

**경기 북부권역(10)**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경기 남부권역(21)**

군포, 과천, 광명, 광주, 김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양평,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평택, 하남, 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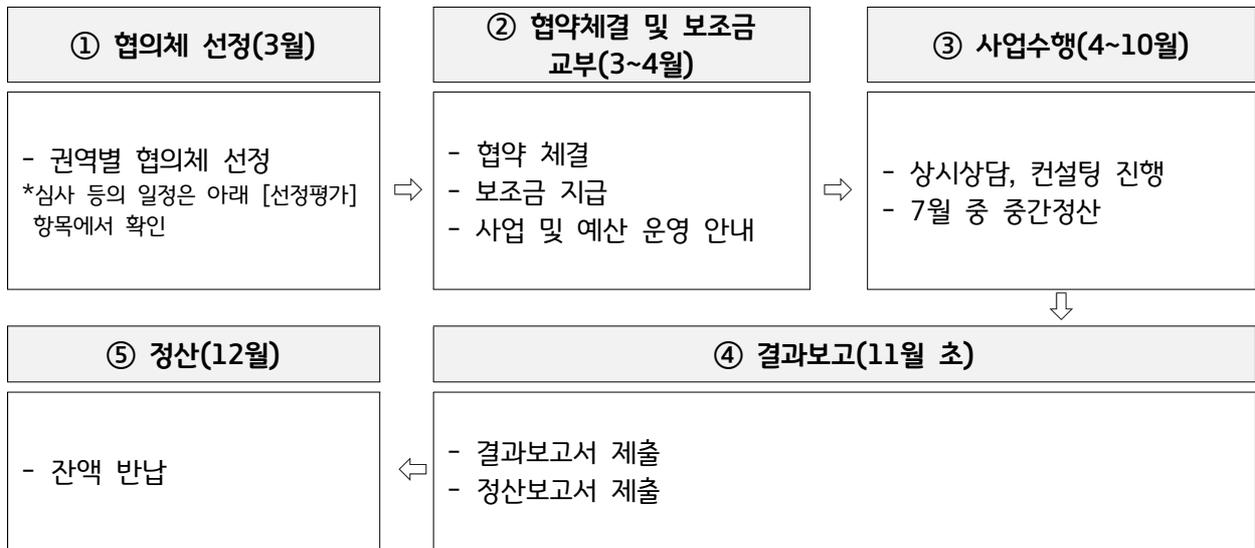


※구분 기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기준에 따름

○ (사업 수행 내용)

- (설립지원) 신규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위한 상시상담, 컨설팅, 교육, 자료제공 등
- (운영 내실화 지원) 설립·변경 등기, 경영공시, 정관·규약 개정 등 협동조합 운영 상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시상담, 컨설팅, 교육, 자료제공 등
- 그 외 협의체의 협동조합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컨설턴트 인력 관리, 교육 커리큘럼 구성 등

○ (추진절차)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 (신청방법)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누리집 > 사업신청

- <https://www.gsic.or.kr/home/kor/M232113179/business/apply/index.do>
- 기한 엄수(지각 제출, 기한 내 필수 보완서류 미제출 시 평가 제외)

○ (제출서류)

제출서류	
순번	항목
①	[서식 1] 지원신청서 1부
②	[서식 2] 협의체 현황 각 1부
③	[서식 3] 회원사 명부 각 1부
④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⑤	[서식 5]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⑥	[서식 6] 기업의 범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약속서 각 1부
⑦	[서식 7] 사업계획서 1부
⑧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 1부 *해당 없을 시 제출 불요
⑨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해당 없을 시 제출 불요
⑩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제출서류 ①~⑦의 경우』 지정된 신청 서식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 양식을 사용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출서류 ⑧~⑨의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제출서류 ⑩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제출서류 ②~⑥의 경우』 주관 협의체, 컨소시엄 협의체 모두 각 1부씩 제출 필수
- 서명 및 날인은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진행하며, 서명 및 날인 누락 시 접수 불가
- ①~③번, ④~⑥, ⑧~⑩ 서류를 순서대로 취합하여 PDF 파일(1개)로 제출

### 3. 신청 시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 미이행 시 보조금 미지급
- 사업신청서 결과 및 정산보고서 등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각종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것이 드러날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 중단환수를 진행할 수 있음
- 7월 중 중간정산을 실시, 사업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경중에 따라 사업비 환수조치를 진행함
- 기업의 단순 변심 혹은 귀책 사유로 사업 중도포기·중단 및 환수사례 발생 시, 향후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사업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지원사업 참여 전 자체적으로 진행 중이던 사업과 연계하여 프로젝트 추진은 가능하나, 약정체결일 전 이미 집행된 금액에 대해 사후보전 방식 불가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내 타 지원사업과 같은 사업내용으로 중복참여 불가
- 심사 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 4. 평가 제외대상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지원제외 업종: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증개업, 주류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일반유흥주점 등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기업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사업(사업목표와 결과 등이 동일 또는 유사)내용으로 이미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에서 정한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법위반 사실 확인 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경기도 법 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기준

-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⑥ 폐기물관리법
-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 등

## 5. 사업예산 분류 및 내용

예산 분류	예산 비목	설명
일반 인건비	전담인력인건비①(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유급근로자의 전담인력 인건비 (근로형태 관계없음)
	전담인력인건비②(근로자 외)	근로자 외, 협의체 소속 등기 임원, 회원사 대표 등의 전담인력 인건비
	상시상담비	사전에 상시상담 투입 인원 규모 설정 필요 (사업계획서 내 추진계획에 기재)
사업수행 인건비	컨설팅비	컨설팅 진행 시 지급하는 수당
	강사비	교육 진행 시 지급하는 수당
일반수용비	임차비	일회성 장소 대관 시 사용하는 대관 비용, 사업 수행을 위한 임차 등(차량임차 불가)
	사무용품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모성 사무용품 구입 비용
	홍보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홍보성 비용, 책자·팸플릿 제작 등
	회의비	집체교육, 컨설팅 진행 시 다과 구입비 (인당 8,000원 한도)

### ○ (일반 인건비) 전담인력 인건비, 상시상담 수당

- 사업 전담인력(행정 업무) 인건비 및 상시상담 수당(상시상담을 맡아 운영)의 합계는 '전체 교부 사업비의 30%' 한도 내에서 책정 및 집행 가능

전담인력	상시상담 인력	총괄 PM
해당 지원사업의 행정 업무 담당자	상시상담을 도맡아 진행하는 전문 상시상담 인력	해당 지원사업 기획 및 운영을 총괄하는 인력
주관 협의체 한정, 1인	내부인력, 예산 범위 내	주관 협의체 한정 1인
인건비 지급 가능	인건비 지급 가능	인건비 지급 불가

※ 총괄PM은 전담인력 및 상시상담 인력과 겸임 불가

※ 전담인력, 총괄PM은 주관 협의체 소속 내부인력만 참여 가능

### ○ (사업수행 인건비) 컨설팅비, 강사비

- 외부 전문강사·컨설턴트: 등급에 따라 예산 내에서 전액 지급 가능
- 내부 컨설턴트: 등급 외부 인력의 50% 한도 및 예산 범위 내 지급

- (내부인력 기준) 주관 및 컨소시엄 참여 협의체 소속 임·직원, 회원사 대표 등
- (강사비 지급 기준표) 일반강의·교육(단일행사 또는 전문가 일회성 특강 등)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지급대상
특강 (Ⅰ)	1시간당	10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li> </ul>
특강 (Ⅱ)	최초1시간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li> <li>•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li> <li>•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li> </ul>
	초과(매시간)	20	
특강 (Ⅲ)	최초1시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li> <li>•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li> <li>•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li> </ul>
	초과(매시간)	20	
일반 (Ⅰ)	최초1시간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강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li> <li>•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등</li> <li>• 전·현직 4급(서기관)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li> </ul>
	초과(매시간)	12	
일반 (Ⅱ)	최초1시간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현직 5급(사무관)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li> </ul>
	초과(매시간)	10	
보조강사	1시간당	4	

- (컨설팅비 지급 기준표)

① 기타 경험 및 경력기준

등급	자격 및 경력 기준	단가(원)	
		외부	내부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노무, 세무·회계 등 관련 경력 또는 직위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보유한 자</li> <li>• 컨설팅 능력이 있는 교수(전임강사 이상), 정부출연(연) 재직자(선임급 이상), 해당 분야 컨설팅 경력보유자(경력 10년 이상),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li> <li>• 사회적경제기업 대표(경영책임자 포함)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최근 3년간 해당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li> <li>•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유관기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li> </ul>	570,000	285,000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설팅 해당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유관기관 근무경력 보유자(경력 5년 이상)</li> <li>• 사회적경제기업 대표(경영책임자 포함)로 2년 이상 근무한 자</li> </ul>	440,000	220,000

## ② 학력 및 경력기준

등급	학력 및 경력 기준	단가(원)	
		외부	내부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li> <li>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li> <li>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li> </ul>	570,000	285,000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사학위를 가진 자</li> <li>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li> <li>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li> </ul>	440,000	220,000

## ③ 자격 및 경력기준

등급	자격 및 경력 기준	단가(원)	
		외부	내부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기술사, 세무사, 법무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3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 자</li> <li>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9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 자</li> </ul>	570,000	285,000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기술사, 세무사, 법무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한 자</li> <li>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li> </ul>	440,000	220,000

## 6. 선정절차 및 내용

○ (선정절차) 1차 서면심사 → 2차 대면심사 → 최종 선정

서면심사(1차)	대면심사(2차)	최종 결과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자격 및 제출서류 적격여부 검토 후 심사</li> <li>· 모집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발표</li> <li>· 질의응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역별 1개소 선발</li> </ul>
3. 5.(화) ~ 6.(수)	3. 8.(금)	3. 12.(화)

### ○ 1차 서면심사(서류)

- 심사일자: 2024. 3. 5.(화) ~ 6.(수)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3인 내외 구성
- 온라인 서면심사 진행
- 서류심사 결과 토대로 대면심사 대상 선정(권역별 2배수 내외)

※ 1차 서류심사 전, 자원 자격 및 필수 제출서류 완비 여부 등 기본사항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 2차 대면심사(면접)

- 심사일자: 2024. 3. 8.(금)
- 심사장소: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회의실(경기도 수원시 효원로1, 경기도청 구청사 신관 2층)
  - 심사방법: 심사위원회(4인 내외)를 구성하여 대면심사 진행
  - 선정방법: 대면심사 평균 70점 이상 기업 중 최고득점 권역별 선정
- ※ 최종 심사 시 합산 평균 70점 미만 기업의 경우 선정하지 않으며, 동점 시 심사위원 내부 협의를 통하여 선정

○ 최종 결과발표

- 발표일: 2024. 3. 12.(화)
- 발표방법: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홈페이지 및 선정기업 개별공지(공문통지)

## 7.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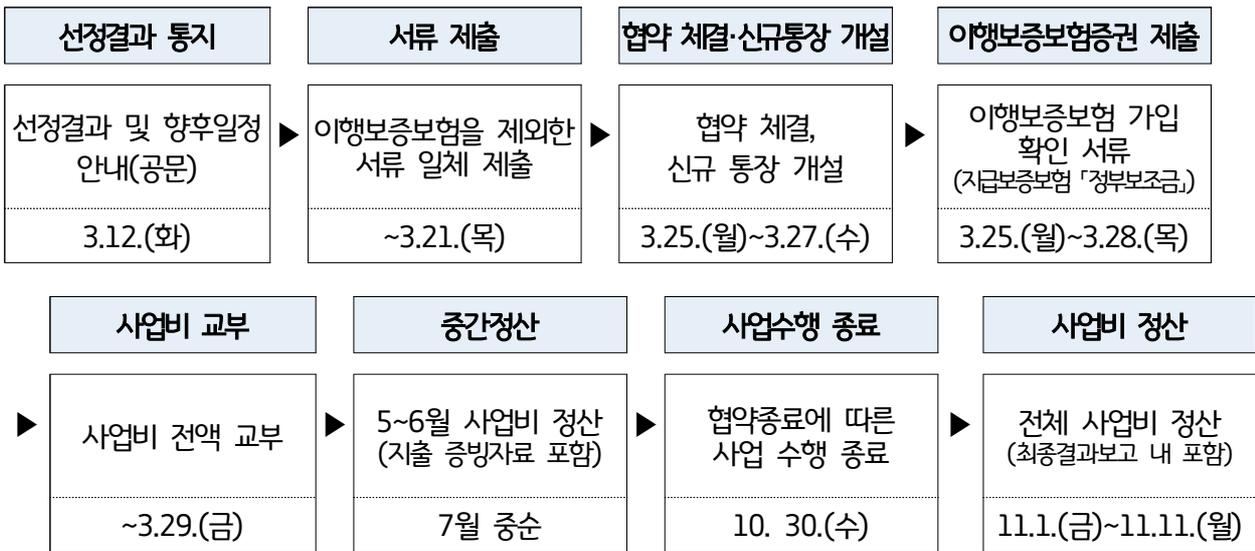
○ 평가항목 계획(안)

항목	심사내용	배점
사업 적합성	- 사업의 취지 및 목적의 부합성 - 사업의 실현 비전 및 지향성	20점
사업 수행 역량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지역 내 컨소시엄 활용 방안) - 대상 협동조합 모집 계획의 효과성 - 사업수행에 필요한 담당 인력 전문성 및 컨설턴트 Pool	30점
사업 타당성	- 계획 실현 가능성 및 구체성 - 사업계획의 차별성	20점
성장성 및 지속가능성	- 권역 내 협동조합 지원 기능의 지속가능성 - 컨소시엄 기반 협업 체계의 지속가능성	30점
합 계		100점

※ 최종 심사 시, 합산 평균 70점 미만의 경우 선정하지 않음

## 8. 사업비 지급절차

### ○ (지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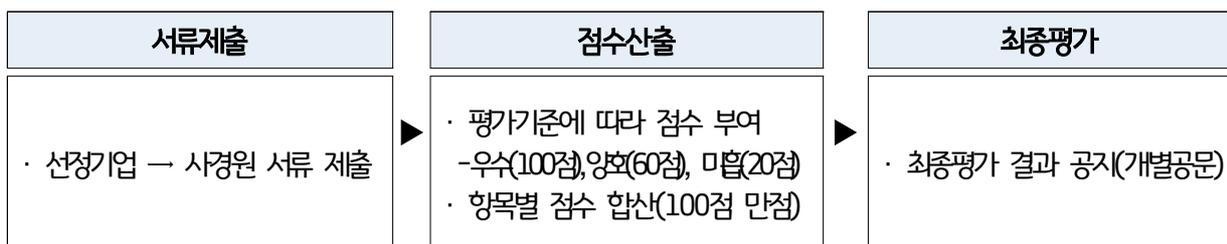


### ○ (사업비 신청 시 유의사항)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보조금 지급 시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필수로 사용하며 보조금 신청 전 필수로 신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 ※ 기존에 우리은행 계좌가 있는 경우에도 신규 개설 필요
- 법인수익금 계좌와 별도로 전용 보조금 계좌를 개설·관리하되 반드시 법인 명의로 개설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 전 보조금 전용 계좌 개설 여부를 확인 예정, 기존 이용하던 통장 사용 시 혼용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사업비 신청 서류) 공문, 교부신청서, 최종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통장 및 카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이행보증보험증권

## 9. 사업 최종평가

### ○ 최종평가 절차(안)



○ (판단 기준 자료) 최종사업결과보고 및 붙임 서류 일체

○ 평가 기준(안)

① 목표 달성: 사업계획 대비 정량목표 달성(문제해결률, 컨설팅, 교육 횟수 등)

평가기준

- 우수 : 달성을 평균 100% 이상, 미달성 항목 부재
- 양호 : 달성을 평균 85% 이상 and 미달성 항목 1개 이하
- 미흡 : 달성을 평균 85% 미만 or 미달성 항목 2개 이상

② 예산 집행: 교부된 사업비의 예산계획 대비 집행률 및 집행 적정성

평가기준

- 우수 : 집행률 90% 이상 and 오집행 미발생
- 양호 : 집행률 90% 이상 and 소액 오집행(5만원 이하) 5건 미만 발생
- 미흡 : 집행률 90% 미만 and 소액 오집행(5만원 이하) 5건 이상 발생 혹은 큰 금액 오집행 발생

③ 자료제출: 결과보고서 별첨 자료 및 증빙자료의 완성도

평가기준

- 우수: 기한준수 and 자료 누락 없음
- 양호: 자료보완 상 경미한 지각제출(근무일 기준 2일 이내 지체)
- 미흡: 심각한 지각제출(근무일 기준 3일 이상 지체) 및 자료 누락

※ 최종평가 결과 ‘미흡’ 시 차년도(2025년) 협동조합 성장지원 사업 참여 불가

○ (결과보고 제출기한)

- 1차 사전제출: 2024. 11. 6.(수)
- 2차 최종제출: 2024. 11. 7.(목)

○ 결과보고 시 제출 서류(안)

연번	항목
①	사업결과보고서(양식 제공)
	별첨 1. 컨설팅 및 상시상담 리스트(양식 제공)
	별첨 2. 만족도 조사 통계(양식 제공)
②	정산보고서(양식 제공)
	별첨 1. 회계장부(양식 제공)
	별첨 2. 통장입출금내역(실물통장 사본)
	별첨 3. 각 비목별 지출 증빙자료

※ 제출 내용은 선정 후 상세 안내

## 10. 문의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회가치연계팀 홍하나 주임  
- ☎031-258-3286 / [hanahong@gsic.co.kr](mailto:hanahong@gsic.co.kr)

별첨 「2024년 협동조합 내실화 지원사업」 공급 협의체 신청 서식 1부. 끝.